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정무위원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제품의 용량 또는 품질의 변경 전후 사항 표시 〉
■ 이정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470호)

2024. 9.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황 승 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정문의원 등 16인
2. 제 안 일 : 2024. 7. 8.
3. 회 부 일 : 2024. 7.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물가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제품 가격도 줄지어 인상되고 있음. 그 가운데 일부 기업들이 소비자의 눈을 속여 가격은 유지하되 제품의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또는 제품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스킴플레이션(Skimpflation)”을 사업전략으로 구사하는 사례에 대하여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기존 제품의 용량 또는 품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현행법상 표시의무를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자가 소비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용량 또는 품질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 전후(前後)에 관한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3호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사업자등이 소비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상품 등의 용량 또는 품질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 전후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등이나 거래 분야의 성질에 비추어 소비자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사업자등이 표시·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이하 “중요정보”라 한다)과 표시·광고를 방법을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를 하도록 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4조(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 ① ----- ----- ----- ----- ----- ----- ----- ----- ----- ----- ----- ----- ----- ----- ----- ----- 1. · 2. (생략)
<신설>	3. <u>사업자등이 소비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상품등의 용량 또는 품질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 전후(前後)에 관한</u>

현행	개정안
② ~ ⑤ (생략)	<u>사항</u> ② ~ ⑤ (현행과 같음)

□ 최근 일부 기업들이 소비자가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가격을 올리는 대신 제품의 용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제품의 용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춤)” 또는 “스킴플레이션(서비스·제품의 질을 낮춤)”이 발생하여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①주요 유통업체 8개 사 판매상품, ②참가격¹⁾ 가격조사 데이터, ③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에 신고된 상품 등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하여 올해 2분기 수집 정보를 조사한 결과 총 11개 상품이 용량이 감소하여 단위가격이 인상된 것으로 확인됨.²⁾

□ 이에 개정안은 사업자가 소비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용량 또는 품질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 전후의 사항을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1)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종합 포털사이트(<http://www.price.go.kr>)로 전국단위 유통업체에서 판매하는 158개 품목(540개 상품)의 가격 정보 제공.

2) 「24년 2분기 슈링크플레이션 모니터링 결과, 11개 상품 용량 감소」,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2024. 8. 26.

□ 현행법 제4조³⁾는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사항,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하면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의 중요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에 따라 사업자가 표시·광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상품등의 용량 또는 품질은 소비자가 구매선택 결정을 할 때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보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변동이 없을 경우 이를 알아차리기 쉽지 않으므로 사업자가 용량 또는 품질의 변동 전후를 중요정보에 포함하여 표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명확한 정보의 전달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도모하기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임.

□ 다만, 동법 동조는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를 하도록 한 사항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 중요정보로 신설하고자 하는 항목인 ‘상품등의 용량, 품질 등의 변경’과 관련하여 「소비

3) 제4조(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광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등이나 거래 분야의 성질에 비추어 소비자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사업자들이 표시·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이하 “중요정보”라 한다)과 표시·광고의 방법을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를 하도록 한 사항은 제외한다.

1.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사항
2.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는 사항가. 소비자가 상품등의 중대한 결함이나 기능상의 한계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구매 선택을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나.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危害)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현저히 그르칠 가능성이 있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

자기본법」 제12조⁴⁾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 행위 지정 고시」가 개정되어⁵⁾ 소비자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인 용량, 규격, 중요 원재료 등의 변경 사실을 충분히 알리도록 하는 규정이 시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참고: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 행위 지정 고시」 별표2>

문 의 처
02)6788-5115

-
- 4) 제12조(거래의 적정화) ①국가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약관에 따른 거래 및 방문판매·다단계판매·할부판매·통신판매·전자거래 등 특수한 형태의 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5) 제3조의2(중요사항 변경 사실 미고지 행위의 금지) [별표1]의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는 소비자에게 변경 사실을 충실히 알리지 아니한 채로 용량, 규격, 중요 원재료 등 소비자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체적인 위반행위 유형 및 고지 방법은 [별표2]와 같다.

용량 등 변경 사실 미고지 행위 및 고지방법

(제3조의2 관련)

1. 위반행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

- 포장지를 변경하더라도 내용물이 동일하면 동일한 물품에 해당
- 용량 등과 가격을 함께 조정하여 단위가격(출고가격 기준)이 변하지 않는 변경 행위는 제외
- 용량 등의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는 제외

2. 고지방법

가. 사업자는 상품의 용량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 사항과 변경 후 사항을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단, 고지기간 중 해당 상품의 판매가 종료되거나, 용량 등이 재차 변경된 경우에는 조기에 고지를 종료할 수 있다.

- (1) 제품의 포장 등에 표시
- (2) 제조사 홈페이지에 게시
- (3) 제품의 판매장소(온라인 판매페이지 포함)에 게시

나. 위 가.에 따른 고지기간은 용량 등이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으로 한다.

< 예 시 >

포장 표시	"100g → 90g", "100ml → 90ml" 등	
홈페이지 게시	제품 용량 리뉴얼 안내 아몬드 일부제품의 용량이 변경 중입니다 리뉴얼 제품 120g 하니버타아몬드 130g / 와사벳맛아몬드 130g / 군옥수수맛아몬드 130g 마늘빵아몬드 130g / 청양마요아몬드 130g / 특북이맛아몬드 130g 불닭맛아몬드 130g 190g 하니버타아몬드 210g / 와사벳맛아몬드 210g / 군옥수수맛아몬드 210g 마늘빵아몬드 210g / 카라멜술티드아몬드 210g / 감맛아몬드 210g 청양마요 아몬드 210g / 특북이맛아몬드 210g / 불닭맛아몬드 210g NEW <td> 용량 변경 안내 2023년 10월 1일부터 우유 원유가가 인상되었습니다. 2013년 원유가격연동제 도입 이후 두번째로 큰 규모로써 이에 따라 자사에서도 부득이하게 용량 조정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변경 200 mL → 180 mL 1,000 mL → 900 mL 고객님의 나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00 유령은 맛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이 고객님께 배달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d>	용량 변경 안내 2023년 10월 1일부터 우유 원유가가 인상되었습니다. 2013년 원유가격연동제 도입 이후 두번째로 큰 규모로써 이에 따라 자사에서도 부득이하게 용량 조정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변경 200 mL → 180 mL 1,000 mL → 900 mL 고객님의 나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00 유령은 맛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이 고객님께 배달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판매장소 게시	#SHRINKFLATION Ce produit a vu son litreage BAISSER et le tarif pratiqué par notre fournisseur AUGMENTER LIPTON SANS SUCRÉE 1.25L NOUS NOUS ENGAGEONS À RENEGOCIER CE TARIF 제품의 용량이 줄어들어 실질 가격이 상승했다는 안내문 게시	